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41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4172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1465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우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1465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접수 제3305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5. 23. 접수 제995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아래 표”부터 제10행 “하였다.”까지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한 2026. 7. 2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약 2달 또는 2일 후인”을 “약 2달 후 또는 2일 전인”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9층 J호 41.50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의정부시 E 대 3022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0229분의 16.95

2. 전라북도 남원시 K 임야 3716㎡
3. 전라북도 남원시 L 답 721㎡
4. 전라북도 남원시 M 답 1002㎡
5. 전라북도 남원시 N 임야 3471㎡, 끝.

